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

2025. 7.

환경부

발 표 순 서

1. 적합성확인제도 개요
2. 서류 작성 방법
3. 적합성요건 검토
4. 결과조치

1. 적합성확인제도 개요

배경 및 의의

-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례 빈번 발생

  ➢ 시설 · 장비 부족, 비정상 가동 등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**'완전한 복구'를 통해 영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불법폐기물 발생원으로 작용 (*감사원 적발사례)**

- 이에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**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"확인" 받도록 함** (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, '20.5.27. 시행, '25.6.30 최초 확인)

  ▶ "적합성확인"은 법률사실을 판단 · 확정하는 "확인"으로 권리가 설정되거나 변경되는 "허가"나 "인가"가 아님

적합성확인 요건

■ 적합성확인 요건

폐기물관리법	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1.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충족 등 〈환경부령〉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	1-1.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1-2.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 · 장비 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을 충족할 것
2.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	
3.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	

■ 적합성확인 대상 : 폐기물처리업자 (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)

※ 건설폐기물처리업자, 폐기물처리신고자는 대상 아님

적합성확인 신청

▪ 신청서 제출시기

➢ 적합성확인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, 신청 개시시점*은 별도 규정 없음

* 지침에서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

➢ 법 제37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마친 처리업자 : 재 개업 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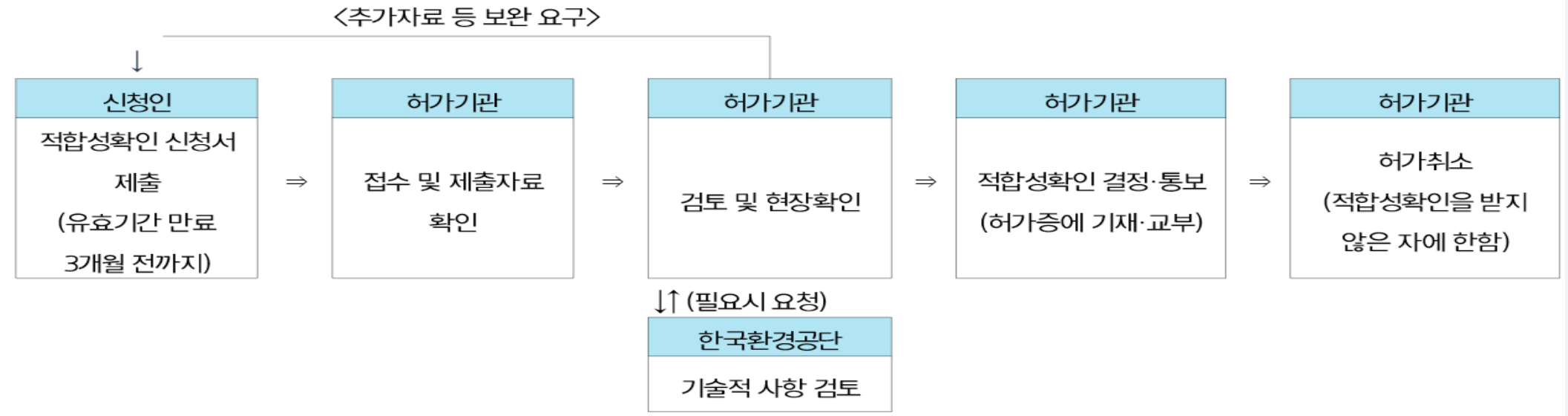

유효기간

▪ 유효기간(영 별표 5의 3) : 5년, 행정처분 또는 벌칙 없는 경우 2년 연장

➢ 최초 시행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허가일자를 기준으로 분산

최초 허가일자		최초 유효기간	
연도	월일	기산일(부터)	만료일(까지)
2008년 이전	1/1 ~ 3/31	2020-07-01	2025-06-30
	4/1 ~ 6/30	2020-07-01	2025-06-30
	7/1 ~ 9/30	2020-10-01	2025-09-30
	10/1 ~ 12/31	2021-01-01	2025-12-31
2009년~2013년	1/1 ~ 3/31	2021-04-01	2026-03-31
	4/1 ~ 6/30	2021-07-01	2026-06-30
	7/1 ~ 9/30	2021-10-01	2026-09-30
	10/1 ~ 12/31	2022-01-01	2026-12-31
2014년~2018년	1/1 ~ 3/31	2022-04-01	2027-03-31
	4/1 ~ 6/30	2022-07-01	2027-06-30
	7/1 ~ 9/30	2022-10-01	2027-09-30
	10/1 ~ 12/31	2023-01-01	2027-12-31

최초 허가일자		최초 유효기간	
연도	월일	기산일(부터)	만료일(까지)
2019년~2022년	1/1 ~ 3/31	2023-04-01	2028-03-31
	4/1 ~ 6/30	2023-07-01	2028-06-30
	7/1 ~ 9/30	2023-10-01	2028-09-30
	10/1 ~ 12/31	2024-01-01	2028-12-31
2023년	1/1 ~ 3/31	2024-04-01	2029-03-31
	4/1 ~ 6/30	2024-07-01	2029-06-30
	7/1 ~ 9/30	2024-10-01	2029-09-30
	10/1 ~ 12/31	2025-01-01	2029-12-31
2024년	1/1 ~ 3/31	2024-04-01	2029-03-31
	4/1 ~ 6/30	2024-07-01	2029-06-30
	7/1 ~ 9/30	2024-10-01	2029-09-30
	10/1 ~ 12/31	2025-01-01	2029-12-31

유효기간

▪ 유효기간의 예외기준

➢ 폐기물관리법 개정(‘11.7.24. 시행)에 따라 종전의 ‘재활용 신고자’가 ‘재활용업’으로 변경허가 받은 처리업자는 재활용업 변경허가 기간(‘11.7.24.~’13.7.23., 2년) 중 허가 받은 일자를 기산일 산정에 적용*

* 현행 기산일 산정기준 적용시 차이는 없으나, 기산일 산정기준이 개정될 경우 적용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➢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의제처리* 대상 사업자는 지정폐기물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적용

*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

※ 의제처리 대상을 제외하고 2개 이상 업종 또는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해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는 허가별로 유효기간이 산정됨

➢ 「환경오염시설법」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이 허가조건 등을 검토 받은 경우, 검토결과서 통지일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봄(통합허가 검토일과 적합성확인 기한을 일치)

2. 서류 작성 방법

1. 제출 서류 및 작성방법

서류명	작성방법
시설 및 장비 명세서	– 실제 운영중인 시설 · 장비*와 현행화 된(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된 사항 반영)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작성 * 규칙 별표 7(폐기물처리업의 시설 · 장비 · 기술능력의 기준)에 따른 시설 · 장비로 한정
기술능력 보유 현황	– 자격소지자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, 고용관계 확인 서류 (예시)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
보관시설 현장사진	– 보관시설의 형태, 높이, 면적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
폐기물 반입량 · 처리량, 연간 가동일수 확인 서류	– (처분업) 폐기물 처분대장, 처분시설 운영 · 관리대장 등 – (재활용업)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, 재활용시설 운영 · 관리대장,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· 포장재의 회수 · 재활용 관리대장 등

2. 설계명세서 및 도면

- (설치명세서) 시설의 명칭, 규격, 수량 등 작성
- (도면) 시설의 외형, 크기,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배치도 수준의 일반도면(수기 작성도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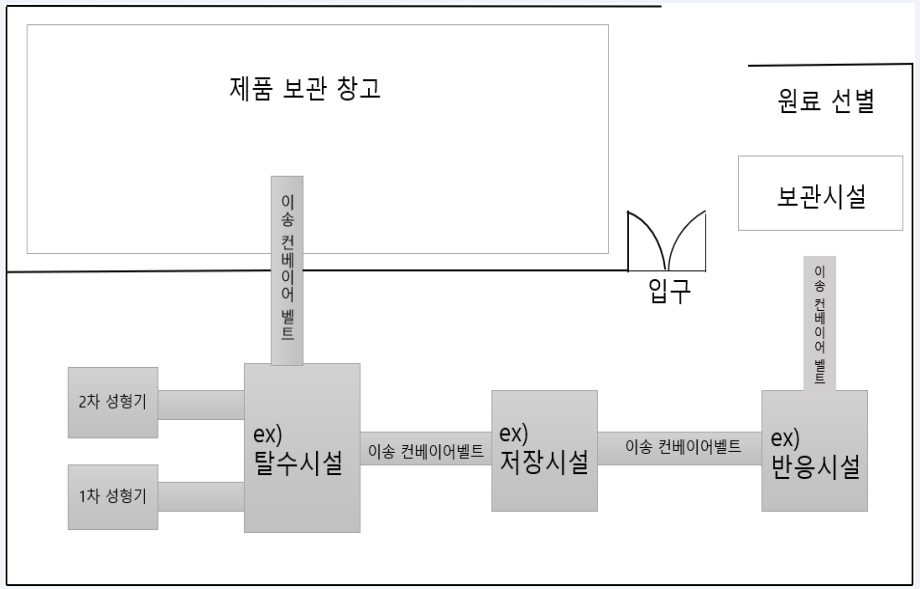

(시설 배치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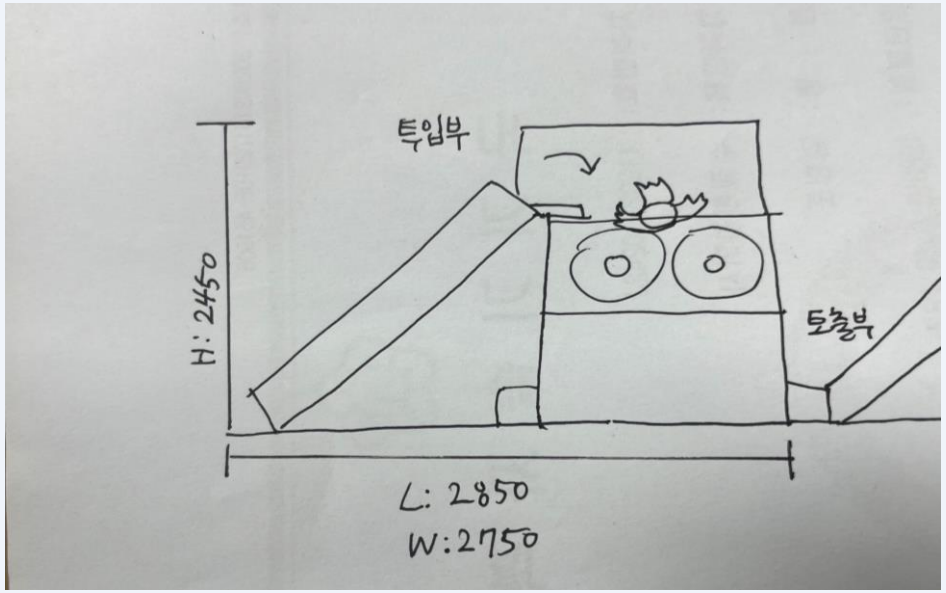

(개별 설비 도면)

3. 처리 공정도

➢ **폐기물 입고부터 처리 후 출하까지 실 공정을 작성** (수기 작성도 가능)

※ 허가증 상 공정도와 일치하는 경우 생략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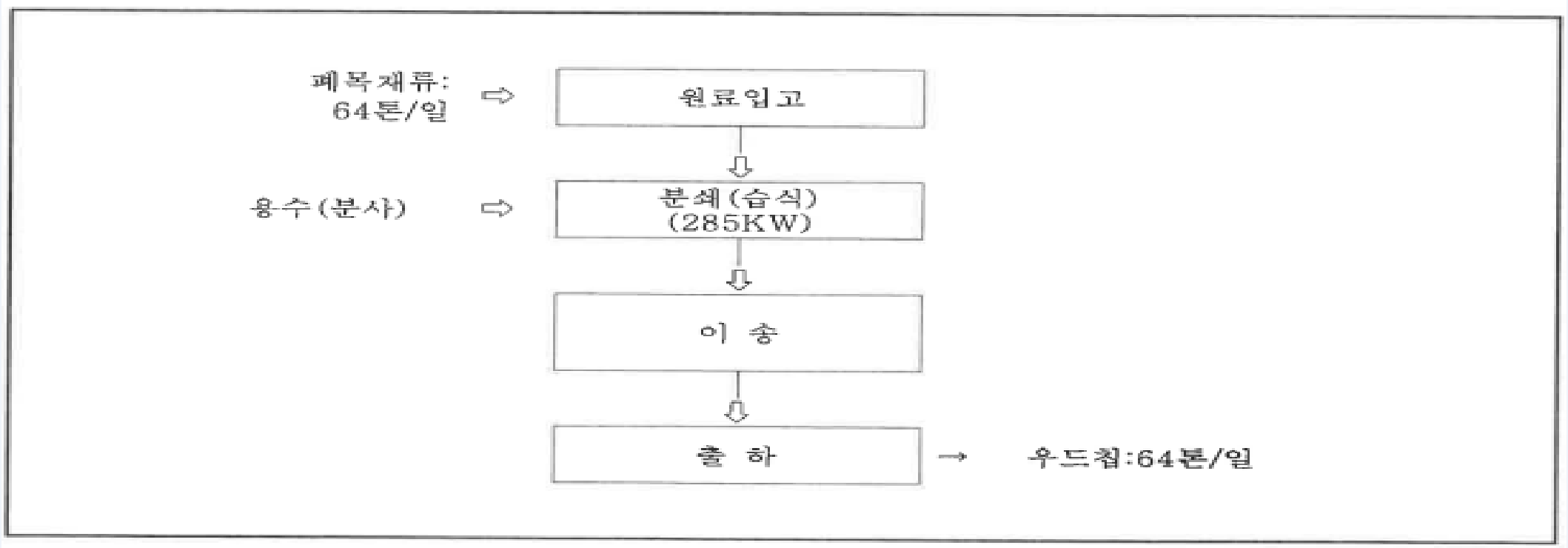

3. 적합성요건 검토



1. 시설 · 장비

➢ 업체가 허가 받은 시설 · 장비 등(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된 사항 반영)을 계속 갖추고 있는 지 검토

◇ 허가 받은 시설 · 장비와 일치하는 경우

– 별표 7의 허가기준 충족 시 : 적합

– 별표 7의 허가기준 미달 시 : 적합, 다만 허가기준의 예외사항,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여부 검토

→ 허가기준을 총족하여 변경허가 등 이행 요구 → 미 이행 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

※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(환경부령 제589호, 2014.12.31) 제2조(폐기물 수집 · 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) ① ~ 다만,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 · 운반 차량의 증차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수집 · 운반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 · 운반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5,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➢ 변경허가로 신 · 증설 중인 시설의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기준에 정상 설치된 것으로 검토

1. 시설 · 장비

➢ 업체가 허가 받은 시설 · 장비 등(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된 사항 반영)을 계속 갖추고 있는 지 검토

◇ 허가 받은 시설 · 장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

– 별표 7의 허가기준 충족 시 :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여부 검토 → 원상회복 또는 변경허가 · 신고 요구 → 이행 시 적합 결정

– 별표 7의 허가기준 미달 시 : 2개월 내 보완 요구(2개월 내 1회 연장 가능) → 미 보완 시 부적합

➢ 정기검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*은 최근의 정기검사 결과서 확인으로 갈음 가능

* 소각시설, 소각열회수시설, 열분해시설, 매립시설, 멸균분쇄시설,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, 시멘트 소성로

➢ 허가기관은 처분업체와 재활용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직접 검토가 곤란한 경우 한국환경공단(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)에 기술검토 요청

2. 결격사유 해당 여부

➢ 대표자, 임원 및 사용인의 결격사유 확인방법

– 대상자 전원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 신원조사 등 방법으로 결격사유 확인

– ‘폐기물관리법’ 제26조제5호 또는 제6호* 해당여부는 한국환경공단(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)이 자료 수집 · 제공 예정

*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자로 10년 미경과, 허가취소자에 업무집행 지시 또는 그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여 이익을 얻은 자

➢ 임원 또는 사용인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

–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하도록 조치

–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

3. 매립 기준과 방법의 위반 여부

➢ 주요 검토사항

– 법 제13조, 시행령 제7조제1항, 규칙 제14조 및 별표 5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중 폐기물 매립 관련 사항

➢ 매립시설 내 각종 시설의 적정 운영 · 관리 여부는 최근의 정기검사 결과서로 확인

* 차수시설, 집수시설, 침출수 유량조정조, 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 · 연료화 처리시설 등

➢ 세부 매립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 여부는 각종 장부*로 확인

*(최종처분업) 최종처분대장, 최종처분시설 운영 · 관리대장, (종합처분업) 중간처분시설/최종처분시설 운영 · 관리대장, 종합처분대장

–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의 수탁 또는 매립 여부 (매립 장소는 사업장 내 · 외 구분 없음)

– 중간처분 후 매립해야 하는 폐기물의 적정 중간처분 및 매립 여부

– 매립대상 폐기물의 매립방식 등 준수여부 (포대 등 포장 매립, 매립구역 표지판 설치 등)

4. 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여부

➢ (검토대상) 허가나 신고 미이행, 각종 조치명령 미이행, 과징금 미납부 등 (과태료, 벌금 제외)

➢ 법적 책임의 이행기간 중에 적합성확인을 신청한 경우

– 최초의 이행기간*에 해당 법적 책임을 전부 이행한 경우에만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검토

*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잔여 이행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2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 가능

(다만, 최초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합성확인과 별개로 조치)

➢ 법적 책임의 이행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전부 이행하지 않은 자가 적합성확인을 신청한 경우

– 2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완료하도록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 가능

(다만, 최초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합성확인과 별개로 조치)

–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이행기간에 전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합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검토

4. 결과조치

적합성확인 검토결과 통보

➢ 적합성확인을 마친 처리업자 : 허가증의 〈적합성확인 사항〉란에 완료여부와 유효기간을 기재 · 교부

*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까지를 기재

➢ 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처리업자* : 허가증의 〈적합성확인 사항〉란에 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하여 교부

* ①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확인 신청서 또는 적합성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

②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, 적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

※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처리업자의 경우 허가증에 미확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음

적합성확인 검토결과 통보

➢ **적합으로 확인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새로운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**

*** 허가기관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검토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하거나, 서류 보완이나 검토가 지연되어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도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이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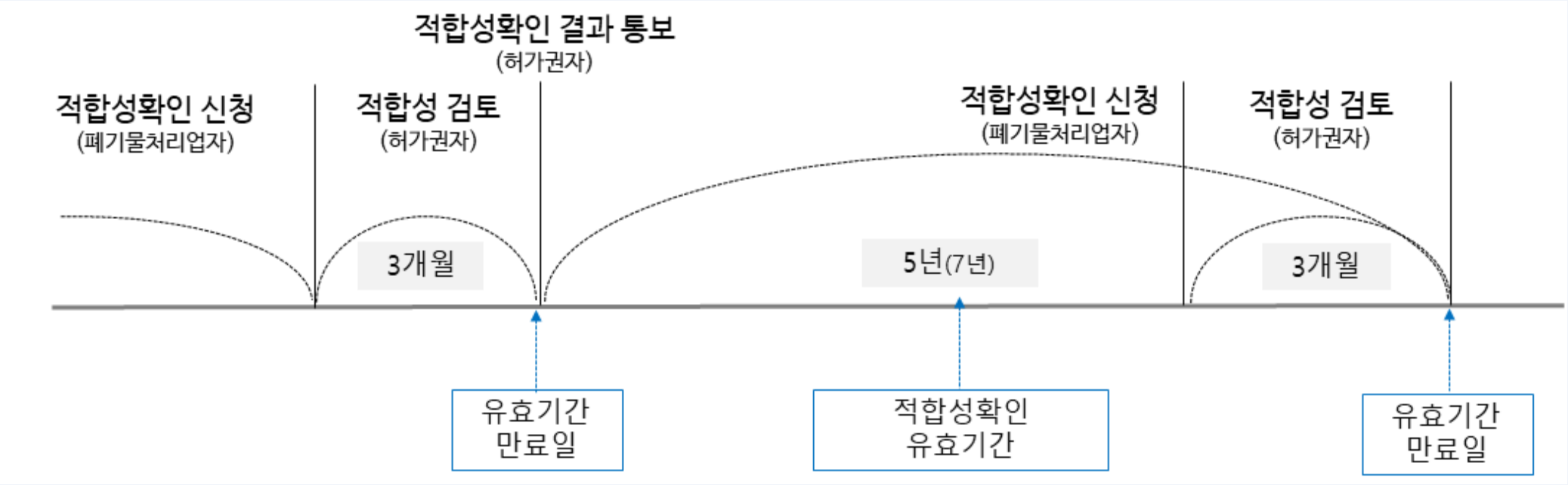

허가취소

➢ 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처리업자에 대해서는 ‘폐기물관리법’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

*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, 청문 등을 거쳐 허가 취소 처분 조치

➢ 특히, 해당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음

* 영업할 경우 법 제64조제8호의2에 따라 처벌(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)

※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통보 받지 않은 처리업자는 적합성확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영업할 수 없음

감사합니다.

환경부